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63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정태호 · 한병도 · 김태년
이학영 · 이수진 · 백혜련
복기왕 · 박민규 · 박홍근
조정식 · 염태영 · 최기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 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비과세) ----- ----- ----- --.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86조의4·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u>제91조의22</u> 까지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4. ----- ----- ----- ----- -----제
4의2. ~ 12. (생 략)	<u>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u> --- ----- ----- 4의2. ~ 12. (현행과 같음)